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정치와 법)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

[국제연합 헌장]
(1991.9.18. 발효, 1991.9.24. 다자조약)

<제1장> 목적과 원칙

제1조

국제연합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제거 그리고 침략행위 또는 기타 평화의 파괴를 진압하기 위한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하고 평화의 파괴로 이를 우려가 있는 국제적 분쟁이나 사태의 조정·해결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또한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실현한다.
- ② 사람들의 평등권 및 자결의 원칙의 존중에 기초하여 국가간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③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인종·성별·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달성한다.
- ④ 이러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각국의 활동을 조화시키는 중심이 된다.

제2조

이 기구 및 그 회원국은 제1조에 명시한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다음의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 ① 기구는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 원칙에 기초한다.
- ② 모든 회원국은 회원국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이익을 그들 모두에 보장하기 위하여, 이 헌장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 ③ 모든 회원국은 그들의 국제분쟁을 국제평화와 안전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한다.
- ④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든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
- ⑤ 모든 회원국은 국제연합이 이 헌장에 따라 취하는 어떠한 조치에 있어서도 모든 원조를 다하며, 국제연합이 방지조치 또는 강제조치를 취하는 대상이 되는 어떠한 국가에 대하여도 원조를 삼간다.
- ⑥ 기구는 국제연합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한, 이러한 원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확보한다.
- ⑦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 안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국제연합에 부여하지 아니하며, 또는 그러한 사항을 이 헌장에 의한 해결에 맡기도록 회원국에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원칙은 제7장에 의한 강제조치의 적용을 해하지 아니한다.

<제2장> 회원국의 지위

제4조

- ① 국제연합의 회원국 지위는 이 헌장에 규정된 의무를 수락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기구가 판단하는 그 밖의 평화 애호국 모두에 개방된다.
- ② 그러한 국가의 국제연합회원국으로의 승인은 안전보장이사회 의 권고에 따라 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제3장> 기관

제7조

- ① 국제연합의 주요기관으로서 총회·안전보장이사회·경제사회이사회·신탁통치이사회·국제사법재판소 및 사무국을 설치한다.

<제4장> 총회

구 성

제9조

- ① 총회는 모든 국제연합회원국으로 구성된다.

임무 및 권한

제10조

총회는 이 헌장의 범위 안에 있거나 또는 이 헌장에 규정된 어떠한 기관의 권한 및 임무에 관한 어떠한 문제 또는 어떠한 사항도 토의할 수 있으며, 그리고 제12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문제 또는 사항에 관하여 국제연합회원국 또는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이 양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

- ② 총회는 국제연합회원국이나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제35조 제2항에 따라 국제연합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의하여 총회에 회부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어떠한 문제도 토의할 수 있으며, 제12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1 또는 그 이상의 관계국이나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이 양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그러한 문제로서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은 토의의 전 또는 후에 총회에 의하여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된다.
- ④ 이 조에 규정된 총회의 권한은 제10조의 일반적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2조

- ①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떠한 분쟁 또는 사태와 관련하여 이 헌장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총회는 이 분쟁 또는 사태에 관하여 안전보장이사회가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권고도 하지 아니한다.

제13조

- ① 총회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연구를 발의하고 권고한다.
 1. 정치적 분야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 및 그 법전화를 장려하는 것.
 2. 경제·사회·문화·교육 및 보건 분야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며 그리고 인종·성별·언어 또는 종교에 관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실현하는데 있어 원조하는 것.

제17조

- ① 총회는 기구의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 ② 기구의 경비는 총회에서 배정한 바에 따라 회원국이 부담한다.

표 결

제18조

- ① 총회의 각 구성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 ② 중요문제에 관한 총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구성국의 3분의 2의 다수로 한다. 이러한 문제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권고,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의 선출, 경제사회이사회의 이사국의 선출, (중략) 신흥위원국의 국제연합 가입의 승인, (중략) 및 예산문제를 포함한다.
- ③ 기타 문제에 관한 결정은 3분의 2의 다수로 결정될 문제의 추가적 부문의 결정을 포함하여 출석하여 투표하는 구성국의 과반수로 한다.

<제5장> 안전보장이사회

구 성

제23조

- ① 안전보장이사회는 15개 국제연합회원국으로 구성된다. 중화민국, 불란서,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영국 및 미합중국¹⁾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다. 총회는 먼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및 기구의 기타 목적에 대한 국제연합회원국의 공헌과 또한 공평한 지리적 배분을 특별히 고려하여 그 외 10개의 국제연합회원국을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한다.
- ②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은 2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중략) 퇴임 이사국은 연이어 재선될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다. (연임은 불가능, 중임은 가능)

임무와 권한

제24조

- ① 국제연합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연합 회원국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을 안전보장이사회에 부여하며, 또한 안전보장이사회가 그 책임 하에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회원국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것에 동의한다.
- ② 이러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연합의 목적(제1조)과 원칙(제2조)에 따라 활동한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안전보장이사회에 부여된 특정한 권한은 제6장, 제7장, 제8장 및 제12장에 규정된다.

제25조

국제연합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이 헌장에 따라 수락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한다.

1) 現 중화인민공화국, 러시아 연방, 프랑스 공화국, 영국, 미합중국

표 결

제27조

- ① 안전보장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 ② 절차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써 한다.
- ③ 그 외 모든 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상임이사국의 동의 투표를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써 한다. (하략)

<제9장> 경제적 및 사회적 국제협력

제55조

사람의 평등권 및 자결원칙의 존중에 기초한 국가 간의 평화롭고 우호적인 관계에 필요한 안정과 복지의 조건을 창조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은 다음을 촉진한다.

- ① 보다 높은 생활수준, 완전고용 그리고 경제적 및 사회적 진보와 발전의 조건
- ② 경제·사회·보건 및 관련국제문제의 해결 그리고 문화 및 교육상의 국제협력
- ③ 인종·성별·언어 또는 종교에 관한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

제60조

이 장에서 규정된 기구의 임무를 수행할 책임은 총회와 총회의 권위 하에 경제사회이사회에 부과된다. 경제사회이사회는 이 목적을 위하여 제10장에 규정된 권한을 가진다.

<제10장> 경제사회이사회

구 성

제61조

① 경제사회이사회는 총회에 의하여 선출된 54개 국제연합회원국으로 구성된다.

임무와 권한

제62조

- ① 경제사회이사회는 경제·사회·문화·교육·보건 및 관련국제사항에 관한 연구 및 보고를 하거나 또는 발의할 수 있으며, 아울러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 총회, 국제연합회원국 및 관계전문기구에 권고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과 준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권고할 수 있다.

<제14장> 국제사법재판소

제92조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의 주요한 사법기관이다. (하략)

제93조

- ① 모든 국제연합회원국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연 당사국이다.
- ② 국제연합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의하여 총회가 각 경우에 결정하는 조건으로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제94조

① 국제연합의 각 회원국은 자국이 당사자가 되는 어떤 사건에 있어서도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를 것을 약속한다. (구속력이 미약함)

② 사건의 당사자가 재판소가 내린 판결에 따라 자국이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타방의 당사자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할 수 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결을 집행하기 위하여 권고하거나 취하여야 할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제96조

① 총회 또는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법적 문제에 관하여도 권고적 의견을 줄 것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요청할 수 있다.

<제15장> 사무국

제97조

사무국은 1인의 사무총장과 기구가 필요로 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로 총회가 임명한다. 사무총장은 기구의 수석행정직원이다.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1991.9.18. 발효, 1991.9.24. 다자조약)

제1조

국제연합의 주요한 사법기관으로서 국제연합헌장에 의하여 설립되는 국제사법재판소는 재판소규정의 규정들에 따라 조직되며 임무를 수행한다.

<제1장> 재판소의 조직

제2조

재판소는 덕망이 높은 자로서 각 국가에서 최고법관으로 임명되는데 필요한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국제법에 정통하다고 인정된 법률가중에서 국적에 관계없이 선출되는 독립적 재판관의 일단으로 구성된다.

제3조

- ① 재판소는 1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다만, 2인 이상이 동일국의 국민이어서는 아니 된다.
- ② 재판소에서 재판관의 자격을 정함에 있어서 2이상의 국가의 국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다중국적)는 그가 통상적으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국가의 국민으로 본다. (제3조제1항 준수를 위함)

제4조

① 재판소의 재판관은 (중략)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가 선출한다.

제8조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는 각각 독자적으로 재판소의 재판관을 선출한다.

제9조

모든 선거에 있어서 선거인은 피선거인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자격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재판관단이 세계의 주요문명형태 및 주요법체계를 대표하여야 함에 유념한다.

제10조

- ①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절대다수표를 얻은 후보자는 당선된 것으로 본다.
- ② 안전보장이사회의 투표는, 재판관의 선거를 위한 것이든지 (중략),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간에 구별 없이 이루어진다.

③ 2인 이상의 동일국가 국민이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의 투표에서 모두 절대다수표를 얻은 경우에는 그 중 최연장자만이 당선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제1항 준수를 위함)

<제2장> 재판소의 관할

제34조

① 국가만이 재판소에 제기되는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36조

② 재판소규정의 당사국은 다음 사항에 관한 모든 법률적 분쟁에 대하여 재판소의 관할을, 동일한 의무를 수락하는 모든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또한 특별한 합의 없이도, 강제적인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당사국간의 합의에 의한 강제적 관할권 인정 가능)

- 1. 조약의 해석 / 2. 국제법상의 문제 /
- 3. 확인되는 경우, 국제의무의 위반에 해당하는 사실의 존재
- 4. 국제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배상의 성질 또는 범위

제38조

① 재판소는 재판소에 회부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임무로 하며, 다음을 적용한다. (국제법의 법원(法源))

- 1. 분쟁국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약
- 2.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
- 3.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
- 4. 법칙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의 사법판결 및 제국(諸國)의 가장 우수한 국제법학자의 학설. 다만,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3장> 소송절차

제55조

- ① 모든 문제는 출석한 재판관의 과반수로 결정된다.
- ②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재판소장 또는 재판소장을 대리하는 재판관이 결정투표권을 가진다.

제59조

재판소의 결정은 당사자 사이와 그 특정사건에 관하여서만 구속력을 가진다.

제60조

판결은 종국적이며 상소할 수 없다. 판결의 의미 또는 범위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소는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해석한다.

<제4장> 권고적 의견

제65조

① 재판소는 국제연합헌장에 의하여 또는 이 헌장에 따라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는 것을 허가받은 기관이 그러한 요청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법률문제에 관하여도 권고적 의견을 부여할 수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